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80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의자 : 최은석 · 유용원 · 성일종
조지연 · 이인선 · 이종욱
유상범 · 배준영 · 김정재
구자근 · 김상훈 · 김기웅
이상휘 · 권영세 · 추경호
안철수 · 박수영 ·김장겸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 8 및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0세”를 “55세”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60세”를 각각 “55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p>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u>60세</u>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 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 (<u>60세</u>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u>55세</u> -----

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 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 · 분할 · 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 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 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 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 ----- ----- -----.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